

간 개발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지하사용권을 가지며, 그 이하는 소유권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하공간 개발을 손쉽게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도 공공용지와 사유지 지하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하이용 계획이나 개발절차, 지하권 보상과 지하개발 지원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정비가 절실히 있다고 보며,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지하공간개발촉진법 제정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하철건설과 관련되어 각종 민원발생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적 보장이 되어야 만 오늘날 서울시 교통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 지하철건설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함.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柳準向 專門委員 수고 많았어요.
다음은 地下鐵建設本部長으로부터 本 請願에 대한 執行部側 意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下鐵建設本部長 李棟 地下鐵建設本部長입니다.

尊敬하는 柳準向 委員長님, 그리고 交通委員會 委員님들께서 평소 地下鐵建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指導鞭撻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委員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1段階區間 83.5km는 그 平均工程이 83%로써 별 무리 없이 工事が進行되고 있으며, 今年 1月에 着工한 2段階區間 61.5km 도 覆工作業 等 初期工事が進行됨에 따라서 安全施工과 品質向上에 萬全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監查院 監査에서 指摘된 5號線 2工區 開花山停車場의 一部 再施工으로 여러 委員님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地下鐵建設을 責任지고 있는 本部長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事例가 없도록 指導監督에 철저를 기할 計劃이며, 持續的인 教育과 點檢을 통한 철저한 現場管理로 地下鐵의 완벽한 施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請願內容에 대한 意見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月 1日字로 새로 轉入한 저희 總務部長을 紹介하겠습니다.

(幹部紹介：總務部長 李甲漢)

前任 總務部長인 朴鍾洙 部長은 北部水道事業所長으로 榮轉하였습니다.

이어서 準備된 油印物에 따라서 請願에 대한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 告)

지하철 7-21공구 노선 일부변경 요구
청원검토

《청원내용》

○ 지하철 7호선 7-21공구 건설공사 구간 중 일부구간(총신대앞~승실대앞)이 15층 규모의 아파트 하부를 통과함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
—지하철 운행시 진동·소음으로 주거환경 악화 우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됨을 사유로

○ 현 건설노선을 기존 도로(사당로) 하부로 통과토록 노선변경 요구

○ 청원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3동 1000번지
관악 현대아파트 114동 403호 김
기호 외 1,944명

○ 소개의원 : 건설위원회 김수복의원

1. 지하철 7호선 건설계획

○ 건설규모 :

연 장 : 42km

정거장 : 41개소, 차량기지 2개소

○ 건설구간 : 도봉~상계~면목~건대입구~강남~승실대입구~광명~온수

○ 건설기간 : '91~'97년

— 1단계(도봉~건대) : '90~'94년

— 2단계(건대~온수) : '94~'97년

<p>○건설비 : 2조 2,204억 원 ('92.10 가격)</p> <p>2. 지하철 7호선 2단계구간 주요추진 경위 ○'89.5 : 시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수렴 ○'89~'91 : 기본설계 용역시행 ○'92.9 : 도시철도 건설 운영기본계획 승인 (교통부) ○'93.1~'93.2 : 도시계획 공람공고 ○'93.2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93.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3.3 : 도시계획시설결정(서고시 제1993-77호) ○'93.12 : 계약 및 공사착공</p> <p>3. 지하철 사업의 특성 ○지하철은 도시교통 수단으로써 신속, 쾌적, 안전, 편리함 ○지하철 건설공사에는 많은 자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며, 공사 중 시민불편 요인이 부분적으로 발생 ○완성후에는 대량 동시 수송능력으로 대중교통에 이바지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함. ○당대뿐만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이용할 도시기간 시설임 ○사업추진에는 모든 시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임</p> <p>4. 지하철 노선선정 원칙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도로현황 및 도시계획 감안 ○수송수요가 많은 지역을 경유 ○지형상태 및 지질조건을 고려한 시공성 및 공사안전성 감안 ○철도공학의 기술적 특성 감안 : 건설규칙 및 선로설계 기준에 따라 가급적 선로의 직선화, 수평화 도모 ○용지수용 범위의 최소화 및 공사시의 시민불편 최소화 ○운영시 열차 안전운행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효율성 제고</p> <p>5. 노선결정 배경(총신대~승설대)</p> <p>가. 지역현황 ○지형조건이 고개마루로서 고지대 주거지 역임 ○지질조건은 경암으로 구성되어 있음</p>	<p>○기존도로와 그 인접지는 자연 계곡을 따라 조성되어 도로형상은 굴곡이 심하고, 가파른 고개길로 형성</p> <p>나. 노선결정 배경 ○총신대앞(사당로)~승설대앞(관악로) 구간의 노선계획 배경은 —지형조건이 고개마루로 고지대이며, 지질조건은 단단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본선은 철도공학 및 터널공학과 지하철 운영 및 열차운전에 가장 유리하도록 직선화 노선으로 계획하여 터널 공법으로 사유지인 등성이 하부지하 70m~90m 깊이를 통과하게 됨 ○건설노선은 지표면에서 70m~90m 밀으로 통과하고 있어 공사시는 물론 운행 시에도 지상건축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본 노선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계획법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기결정하고, '93.12 공사착공되었음.</p> <p>6.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p> <p>가. 주민요구 노선 검토 ○주민요구 노선은 자연계곡부를 따라가게 되어 계곡부의 특성인 지질조건(단층 및 절리발달, 지하수 파다)이 불량이며, 터널 시공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건설 노선에 비하여 불리 ○선로조건상 곡선반경 400m인 평면곡선 3개소가 연속 설치되어 선로형상이 나빠 —열차운전 및 승객의 승차감 불량 —궤도시설물의 마모량이 증대되어 유지 관리에 불리 ○노선이 우회하게 되어 노선연장이 길어지므로 —운전시격 및 건설공사비 증대 ○살피재정거장은 건설규칙상 정거장의 최소한계 곡선상에 설치되어 승·하차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주로부터의 상대적</p>
---	--

<p>인민원발생</p> <p>※따라서 건설노선에 비하여 철도기술 측면인 열차운전효율, 운행안전과 건설공사의 합리성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제반사항에서 불리</p> <p>나. 주민 우려사항 겸토</p> <p>○주거환경 피해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본 구간의 지하철이 지표면에서 70~90m 밑으로 통과하는 구간이므로 소음의 영향은 없을 것임 <p>—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중 진동：사유지 하부에 터널 공사시에는 정밀시공과 계기에 의한 계측 관리, 미진동 공법 등을 시행하여 진동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운행시 진동：궤도 구조에 특수소재로 제작된 방진재가 사용되는 최신 기술인 탄성방진궤도를 도입 시행하고, 레일의 중량화 및 장대화로 시공할 계획이며, 본 구간은 토퍼가 70~90m로 심도가 깊어 열차운행시 진동 영향은 없을 것임. <p>○사유재산권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터널이 통과하는 지하공간(폭 12.5m × 높이 12.5m) 범위에 대해서만 구분지상권을 설정 —모든 지상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지하의 경우에는 지하철이 통과하는 범위(12.5m × 12.5m) 외의 모든 지하공간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 <p>7. 결론</p> <p>○건설노선은 관계전문기술진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입안되고, 도시철도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미 결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임</p> <p>○지하철은 서울시 1,100만 시민의 도시교통시설로서, 수 세대에 걸쳐 이용할 기간 시설인 바</p> <p>○철도기술상 및 터널 시공상 유리하지 않은 노선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음</p>	<p>.....</p> <p>이상 報告드렸습니다.</p> <p>○委員長 柳準向 地下鐵建設本部長 수고 많으셨습니다.</p> <p>다음은 本 請願에 대한 質疑答辯이 있겠습니다.</p> <p>質疑答辯은 地下鐵建設本部長을 상대로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金箕英委員님 質問해 주십시오.</p> <p>○金箕英委員 金箕英委員입니다.</p> <p>本部長께서는 왜, 當初 그 路線計劃이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當初 路線計劃? 지금 請願의 件 말이지요.</p> <p>○地下鐵建設本部長 李棟 지금 저희가 建設하고 있는 路線이 當初의 路線입니다.</p> <p>○金箕英委員 當初 路線이 그리 되어 있지 않고 道路를 따라서 하게 되어 있었다는데 當初의 路線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7-21工區 말이지요.</p> <p>○地下鐵建設本部長 李棟 當初의 路線이 저희가 建設하고 있는 路線입니다.</p> <p>○金箕英委員 그런데 왜 그러면 各 地圖上에 라든가 모든 데에 그렇게 當初 道路를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p> <p>○地下鐵建設本部長 李棟 그것은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p> <p>○金箕英委員 서울市에서 그런 資料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p> <p>○地下鐵建設本部長 李棟 地下鐵建設本部에서는 그런 資料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p> <p>○金泰雄委員 그렇다면 아까 紹介議員이 主張한 바가 다르다는 얘기 같은데…….</p> <p>○地下鐵建設本部長 李棟 저희가 把握하고 있기는 다릅니다.</p> <p>本 區間의 舍堂路를 따라서 路線을 決定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當初 舍堂路에서 路線을 變更했다는 것은 地下鐵建設本部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p> <p>○金箕英委員 그러면 모든 것이 地下鐵工事</p>
---	---